

# 이사회규정

제정 1999.01.01.

개정 2000.09.01.

2008.03.08.

2013.02.07.

2018.12.18

## 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조 (적용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 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.

## 제 6조 (회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3월에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 6조의 2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.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

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#### 제 7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는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8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의안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나.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지정
    - 다.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
    - 라.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마.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바. 정관의 변경
    - 사. 자본의 감소
    - 아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   - 자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   - 차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   - 카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    - 타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   - 파. 주식배당의 결정
    - 하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   - 거. 이사의 보수
    - 너.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  - 더.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   - 러. 기타 주주총회에의 부의할 의안

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
- 가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나. 공동대표의 결정
- 다.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마.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
- 바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사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아. 분할, 분할합병,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
- 자. 분기배당의 결정
- 차.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
- 카.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타.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- 파.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신주의 발행
- 나.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다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라.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- 마.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
- 바.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사.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
- 아. 중요한 차입계약 및 타인을 위한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
- 자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 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
- 차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카. 자기주식의 소각

4. 기타

- 가.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대한 승인
- 나. 이사의 競業 승인
- 다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한 대규모내부 거래에 대한 승인
- 라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마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·집행한다.
- ③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일부를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.

## 제 9조 (위원회)

-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1. 감사위원회 :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,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위원회는 법령,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9조의 2 (위임)

-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가 별도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은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한다.
- ②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## 제10조 (사후승인)

- 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각 이사에게 안건의 내용을 통지하고 그 찬반의사에 따라 이를 집행한 후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10조의2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

## 제11조 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-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12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이사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는 간사가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99. 1.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00. 9.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08. 3. 8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- ④ 이 규정은 2013. 2.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18. 12.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.  
다만, 제5조 제1항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안 시행일 전에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